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찰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2. 16.(일) 오후 4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 순서

1.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2. 모두 발언 (장경욱 변호사)
3. 검찰증거에 대한 변호인 의견_PPT 자료 (김용민 변호사)
4. 나머지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 (양승봉 변호사)
5. 증거은닉 무고·날조 고소사건 경과 보고 (김유정 변호사)
6. 질의응답
7. 정리 발언 (천낙봉 변호사)

참고자료 목록

1. 국정원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2013년 1월 15일경 수사시 이미 국정원 수사관이 유우성에게 통행기록을 제시하면서 조사를 한 내역

2. 증인 유가려의 법정 증언

유가려에게도 유우서의 통행기록을 제시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음

3. 항소심 공판조서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수사단계에서 유우성에게 제시되었음을 검사가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

4. 중국 삼합세관 공무원과의 통화내역

토요일 오후에는 삼합세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통화내용
유우성의 출입국기록에 표시된 2006년 6월 1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는 삼합세관이 운영되지 않음

답 목록부답하다.

문 피의자가 당시 수두를 앓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06.5.27 이후 추가 밀입북 기간을 은폐하다 보니까 수두를 앓은 기간이나, 장소를 허위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지금 수사관이 2006.5.27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이후 며칠 후 다시 북한으로 도강하여 6.10 중국으로 출경한 상황에 대해 추궁하다 보니까, 중국 체류일정을 급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북경에서 수두를 앓은 것이 맞습니다.

문 수두를 앓은 날짜는 언제인가요?

답 6월 초순입니다.

01698

진술인



인

2013년 1월 15일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관 김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관 김

01702

문 피고인이 탈북한 이후에 어머니가 집에 있던 피고인이 입던 옷들을 주변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아는지요.

답 예. 오빠 동무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주었고, 아버지도 주었습니다.

변호인 양승봉

증인에게

문 누구에게 주었나요.

답 리명학 오빠과 리정국 오빠, 승진이었던가 하는 오빠에게도 주었습니다.

문 수사관은 "제대로 안 해, 솔직히 말해"라고 하면서 증인이 말하지 않으면 잡아먹을 것처럼 물병으로 머리를 치면서 사실대로 말 하라고 다그쳤지요.

답 예.

문 수사관이 하도 사실이 아닌 것을 강요하여 증인도 악이 나서 대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자 수사관은 증인에게 "성격부리냐"며 다그쳤지요.

답 "너 나한테 지금 성격부리냐, 성질쓰냐"라고 하였고, 때리면서 "또 성질쓰냐, 또 성격 부러라"라고 하였습니다.

문 대머리 수사관은 서류를 보이면서 "증거가 다 있는데, 명확한 증거인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국가에서 봤다고 하는데."라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답변을 강요하였지요.

답 예.

문 그 서류를 보여주던가요.

답 근처에서는 보여주지 않고, 멀리에서 기록 같은 것을 넘기면서 보여주었습니다.

문 그 서류에 뭐가 기록되어 있던가요.

답 오빠의 출입국기록입니다.

날조된 출입경기록의 출처를 밝혀야 될 것이라고 진술하고, 아울러 날조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해야 마땅하다고 진술

재판장

검사들에게

변호인 측의 동영상 내용 및 프레젠테이션(PT)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물은즉,

검사 이시원

1. 기본적으로 지금 밝힐 수 있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거나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할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
2. 우선 변호인 측에서 저희가 제출한 2013. 12. 5.자 의견서를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접하지 못한 자료로 생각됩니다만 이 출입경기록의 발급경위에 대한 다툼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 저희가 다시 외교채널을 통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의 출입경기록이 발급된 것이 맞느냐는 공문을 다시 보낸 후 그런 내용의 공문은 발급된 것이 맞다는 공문을 우리 공관을 통하여,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을 통해서 주고받은 것을 다시 첨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부분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 진술
3. 위 동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접근을 할 때는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넓은 권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므로, 과연 실무민원담당자의 견해가 공식적으로 시공안국의 결정, 입장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
4. 그리고 두 번째 출입경기록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에 이미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유우성에게 이 내용의 자료가 제시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해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는 바로 증거로 제출된 이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자료를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고, 이 출입경기록이 진정한 자료라는 중국의 입장이 명백히 표시된 이상 이 자료에 신빙성을 둘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그 이외에 얘기한 통행증 부분은 저희

통화녹취내용

세관원 : 여보세요?

문의 : 여보세요?

세관원 : 누구시죠?

문의 : 안녕하세요!

세관원 : 네! 말씀 하세요!

문의 : 뭐 좀 문의보고 싶은데요, 삼함세관은 토요일에도 업무를 진행하시나요?

세관원 : 토요일에는 업무를 오전 11시 30분까지 근무하구요, 오후에는 휴식입니다.

문의 : 오전 몇시부터 몇시 까지 근무하신다고요? 오전 몇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요?

세관원 : 아침 8시 30분 부터 11시 30분까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문의 : 그러면 지금까지 늘 토요일에 이러하셨습니까?

세관원 : 네! 역대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하였습니다!

문의 : 삼함세관은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업무를 본다는 말씀이죠?

세관원 : 네! 네! 네! 네!

문의 : 혹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오후에 입국하려면 입국이 가능한가요?

세관원 : 입국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입국이 안됩니다!

문의 : 입국이 안되는군요!

세관원 : 오후에는 세관이 휴무거든요!

문의 : 오후에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세관원 : 네! 네! 네! 네! 오전 11시 30분이면 집으로 갑니다!

문의 : 토요일에는 11시 30분이면 퇴근하고 업무를 마감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세관원 : 네! 네! 네! 네!

문의 : 인터넷에서 삼하변경세관의 홈페이지를 찾았는데요, 위에 말씀하신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나요?

세관원 : 예전에는 공지를 올렸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한 탓에 문자가 깨지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문의 : 지금까지 토요일 출근시간을 변함이 없었지요?

세관원 : 네!

문의 : 한가지만 더 문의할게요, 중국의 모든 세관은 토요일 오전만 출근하시고 오후에는 휴무 인가요?

세관원 : 대다수의 중국과 북한세관은 그렇습니다. 24 시간 근무하는 세관도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세관도 있긴 하지만 적습니다!

문의 : 훈춘세관은요?

세관원 : 훈춘세관은 북한정부와의 조정하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북한 라진과 중국 훈춘세관은 토요일 하루 종일 근무하고, 다른 세관들은 토요일 11시 30분까지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세관원 : 네! 네! 네!

문의 : 훈춘세관은 토요일 하루 종일 근무하고, 다른 세관은 토요일 11시 30분 까지도 근무하는 퇴근한다는 말씀이지요?

세관원 : 네! 네! 네!

문의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관원 : 죄송한데 어디시죠?

문의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북한에 가게 되면 기본으로 몇시까지 근무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2006년, 2007년에도 오전에 근무하시고 오후에는 휴무죠?

세관원 : 네!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문의 : 네! 감사합니다.